



게임물관리위원회

수신자 카루스 대표이사
(경유)

제목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

1. 관련법률: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, 제32조제1항제1호, 제44조제1항제2호

2. 우리 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받은 않은 게임물의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, 귀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"카루스(<http://kharus.com>)" PC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3.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유예하니, 다음과 같이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규 신청 또는 이용제공 중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임물명: 카루스

나. 시정내용: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또는 이용제공 즉시 중지

다. 등급분류 신청기간: 본 문서 수령 후 3근무일 이내

라. 시정요청문의: 게임물관리위원회 온라인조사팀(051-720-6851)

마. 등급신청문의: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(051-746-0027). 끝.

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



★주임 김재운 팀장 강소라 부장 06/25 이상현

협조자 주임 오현탁

시행 온라인조사팀-579 (2014.06.25.) 접수 ()

우 612-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/www.grac.or.kr
전화 전송 / heronike@grac.or.kr / 공개

소통, 도전, 창조